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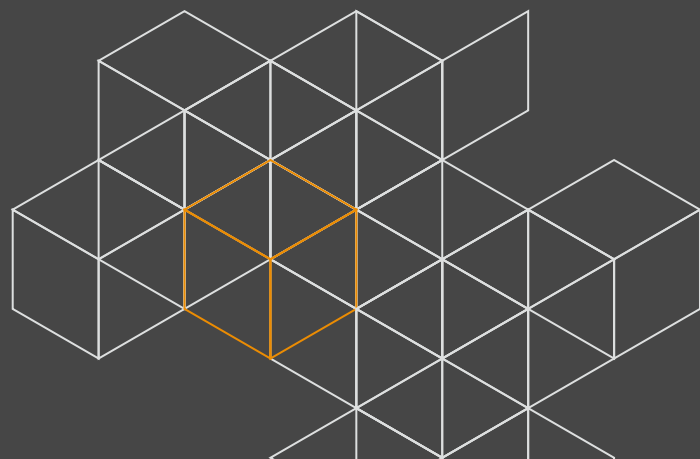


PwC 베트남 뉴스레터

베트남 현지 수출입 거래에 대한
관세 업데이트



www.pwc.com/vn



At a glance..

관세청(“GDC”)은 최근 외국 무역업자와 관련된 현지 수출입 삼자간 거래에 관한 2023년 7월 31일자 공문 3987/TCHQ-GSQL 및 2023년 8월 8일자 공문 4146/TCHQ-GSQL을 발표했습니다. 동 공문들은 2022년 11월 10일자 뉴스레터 및 2023년 7월 13일자 [뉴스레터](#)에서 다뤘던 현지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발전사항을 나타냅니다.

세부 사항

현지 수출입 관세 절차는 관세법을 안내하는 시행령 08/2015/NĐ-CP 제35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됩니다:

“1. 현지 수출입에는 다음 사례를 포함합니다:

- a. 외국 무역업자와의 임가공 계약 하 베트남에서 생산되고 베트남 조직 또는 개인에게 판매되는 재화;
- b. 국내기업, 수출가공기업 및 비관세 지역의 기업 간의 매매 거래; 또한
- c. 베트남 기업과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해외 조직 또는 개인 간의 매매 거래로, 베트남에 소재하는 다른 기업에(서) 재화가 직접 인도 또는 수령되도록 안내되는 경우.”

공문 3987 및 4146은 위의 1.c 사례에 따른 현지 수출입 거래를 다루며 베트남에 주재하는 외국 무역업자들은 현지 수출입 절차에 관여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공문 3987은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무역업자를 정의하는 해외무역관리법 05/2017/QH14 제3조 5항 및 시행령 90/2007/ND-CP를 참조하며 여기서:

- 해외무역관리법 05/2017/QH14 제3조 5항에 따르면:
“5.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무역업자는 투자, 상업과 기업법에 규정하는 형태로 베트남에서 투자 및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상업과 기업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대표 사무소 또는 지점이 없는 외국 무역업자를 말합니다.”

세부 사항

- 시행령 90/2007/ND-CP 제3조 2항에 따르면:

“2.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무역업자는 투자법과 상업법에 명시된 형태로 베트남에 직접 투자가 없거나, 또는 상업법에 따라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 또는 지점이 없는 외국 무역업자를 말합니다.”

공문 4146은 대표 사무소, 지점, 또는 자회사, 경제조직 등과 같이 베트남에 이미 주재하거나, 자본출자; 주식 또는 지분 매입; 투자 프로젝트; 사업협력계약; 정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투자 및 경제조직관 관련된 외국 무역업자는 현지 수출입 거래에 참여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해당 공문들은 이전 뉴스레터에서 다뤘던 일부 현지 수출입과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강조합니다. PwC 베트남은 향후 발전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해당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원하시는 경우, 저희 관세 전문가에게 연락주십시오.

Contact us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guyen Thanh Trung

Partner

+84 903 003 847

nguyen.thanh.trung@pwc.com



우정균 – 하노이 사무실

Senior Manager, Korean CPA

+84 (24) 3946 2246 Ext. 1011

jung.kyun.woo@pwc.com



Nguyen Huong Giang

Partner

+84 979 001 783

n.huong.giang@pwc.com



박준형 – 호치민 사무실

Senior Manager, Korean CPA

+84 (28) 3823 0796 Ext. 4611

park.junhyung@pwc.com



www.pwc.com/vn

